

의무소방원 복무만료예정자 명부(제53조제3항관련)

의무소방 제 기

[illegible]

1. 평단은 귀향지 시·도별 군번순으로 작성하고, 귀향지를 달리할 때는 장을 바꿔서 작성
2. 소속란은 시·도까지만 기록
(예 : 서울, 전북,)
3. 계급란은 군계급으로 환산하여 기록
(특방은 하사, 수방은 병장, 상방은 상병, 일방은 일병, 이방은 이병으로 각각 기록)
4. 군번은 각자가 부여받은 군번순으로 기록
5. 성명란은 한글과 ()안에 한자를 병행기록
(예 : 홍길동(洪吉童))
6. 주특기란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록하지 않는다.
7. 귀향지란은 주민등록초본에 따른 거주지를 번지까지 기록
8. 입대일자란은 소방청에서 일괄하달하는 일자로 기록
9. 사고내용란은 복무기간중 사고로 복무연장된 자나 복무 연장중인 자(휴직, 영창, 복무이탈중인 자)와 사고중인 자(구속된 자와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중인 자)를 예시와 같이 기록
예시 : 휴직(2월 10일) 구속
('02.4.1~5.10) ('02.2.10)

210mm×297mm(일반용지60g/m²)